

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

주거 제공 시 장애에 근거한 차별

- 1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거나 건물을 임대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. 뉴저지 주 차별금지법(LAD)은 건물을 판매, 임대, 또는 구매하고자 할 때 주거 제공자가 장애에 근거하여 현재 및 잠재적 세입자를 차별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주거 제공자에는 집주인, 콘도미니엄 협회 및 주택 소유자 협회 등이 포함됩니다.
- 2 그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 제공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. 주거 제공자가 장애를 이유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예를 들어, 집주인은 서비스견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3 주거 취득 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건이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주거 제공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적절한 보조 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추가 보험을 요구하거나 임대 기간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. 집주인은 임대 조건으로 장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4 그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될 수 없습니다. 집주인은 당사자의 장애나 가족 구성원의 장애를 강제 퇴거에 대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집주인은 세입자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거나 세입자에게 서비스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대 기간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5 주거 제공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거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세입자의 장애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장애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날짜에 맞추어 월세를 받도록 하거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를 유닛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주거 제공자가 이를 거부한다면,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, NJCivilRights.gov를 방문하시거나, 또는 1.833.NJDCR4U로 연락해주시시오. 민권국(DCR)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뉴저지 내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 금지법 (LAD)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, [여기](#)를 클릭하십시오.

차별 금지법 (LAD)은 보복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. 누구도 차별 금지법 (LAD) 위반 가능성을 신고하거나, 사내, DCR 또는 법원에 차별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, 차별 금지법 (LAD)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.

다른 언어 버전은 DCR 웹사이트 [리소스 섹션](#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.gov를 방문하시거나 1.833.NJDCR4U로 연락해주시시오



뉴저지 법무장관집무처(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)

NJCivilRights.gov



DIVISION ON
NJ CIVIL RIGHTS
@CivilRightsNJ #CivilRightsNJ #StandUpAgainstHate



2024년 3월 11일